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01

발의연월일: 2020. 12. 3.

발 의 자:김영주・이상민・안민석

한병도 · 송영길 · 신동근

전해철・박 정・이용선

김영호 • 윤건영 의원

(119]

제안이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못지않게 국민적 지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함. 그러나 평화·통일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 주민의 균형적 참여가 제약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관심은 점차 저하되는 실정임. 이에, 남북관계 발전기반을 분권·협치형으로 조성할 필요성은 증대된 반면, 현행법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이라는 정부의 책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시책 사업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나.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12조의2제1항).
 - 1) 정책과 실적에 대한 대국민 공개와 홍보
 - 2)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정책이해 증진
 - 3)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역균형 설치
 - 4)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 지원
 - 5)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그 밖의 사업
- 다.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절차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재정상의 책무)"를 "(재정상의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기반의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의 마련 및 시행
 - 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
 - 3. 남북관계 발전기반의 조성을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 운영
 - 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분석 및 공개
 - 5. 남북관계 발전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6.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 혂 행 개 정 제12조(재정상의 책무) (생 략) 제12조(재정상의 조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을 하 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기반의 홍보 등) ① 정부는 남북관계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 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야 하다. ②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 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 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한 다양한 홍보 방안의 마련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 및 시행 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 시행한다. ③ 정부는 남북 간의 교류 및 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관계 발전에 관한 실적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국민참여 사업 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 3. 남북관계 발전기반의 조성 을 위한 시설의 지역별 설치 다. • 운영 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 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

- •분석 및 공개
- 5. 남북관계 발전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6.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기반 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